

국제 ODA 동향

(2006. 11)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분석

[Page]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원조사회의 노력 및 시사점 [2]
 - ◆ 최근 국제원조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원조효과성 제고'에 관한 논의 배경, 파리선언의 주요 내용 및 이행노력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가 우리나라 ODA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주요토픽

- OECD의 원조관련 주요 개념 및 최근 논의 동향 [18]
 - ◆ 국제원조사회의 ODA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OECD의 원조관련 조직 및 규범, 주요 개념 등을 살펴보고 최근 ODA와 관련된 논의주제를 정리

단 신

- 국제 개발원조기관간 다자협약체 결성 [35]
 - ◆ 2006년 9월 싱가포르에서 결성된 국제 개발원조기관간 다자협약체의 주제발표 내용을 소개
- 제98차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의 주요 내용 [39]
 - ◆ 2006년 11월에 개최된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의 주요 논의내용을 정리

자 료

- 2005년도 우리나라 ODA통계(확정치)의 주요 내용 [44]
 - ◆ 2006년 10월 OECD DAC앞으로 통보된 우리나라 ODA 통계 확정치에 대한 분석 자료

이슈분석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원조사회의 노력 및 시사점

【요약】

- 최근 국제원조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관한 논의 배경, 파리선언의 주요 내용 및 이행노력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방향에 미치는 시사점을 모색

I.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의 탄생 배경

- 국제원조사회는 '90년대에 원조피로 현상과 함께 원조 규모가 급감하기도 하였으나 '90년대 후반 들어 OECD를 중심으로 원조 논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함
- '90년대 초반 舊소련연방의 붕괴에 따른 냉전체제 해체('91. 12월) 후, 세계화의 급진전과 함께 원조피로 현상이 나타나면서 원조규모가 급감하게 됨
 - 국제외교는 동서간 대립에서 벗어나 국가간 교류증대, 규제완화, 기술혁신 등을 바탕으로 세계화(Globalization)가 급진전 되면서 전세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저개발국의 빈곤문제는 오히려 가중되었음
 - 한편, 냉전종식으로 국제관계가 극도로 다양화 및 지역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원조공여의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이 초래되어 전세계적으로 원조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낳음
-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들이 원조의 최종 목표를 빈곤감축으로 설정하면서 ODA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짐
 - OECD DAC¹⁾는 '96년 5월, 2015년까지 빈곤층을 절반수준으로 감축하는 국제개발목표(IDG;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를 채택

1)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로서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1960년 출범하였고 현재는 평가, 환경, 남녀평등, 빈곤감축, 통치제도, 분쟁조정, 통계 및 원조효과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하부조직을 갖추고 있음

- 세계은행 · IMF는 '99년 9월 고채무빈국(HIPC)에 대한 외채탕감 및 국제적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빈곤완화전략문서(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를 채택
- 2000년대 들어서면서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 설정과 함께 국제원조사회에서는 **공적개발원조 논의가 본격화**됨
 - 2000년 9월, 191개 UN 회원국이 참가한 'UN 새천년정상회의'에서는 **밀레니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통해 **빈곤퇴치가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고 2015년까지 빈곤퇴치를 위한 8가지 목표를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채택
 - MDG는 크게 1~7번째 목표에서 절대빈곤 퇴치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고, 마지막 8번째 목표*에서는 공여국이 MDG 달성을 위해 지원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
 - * MDG 8번째 목표 : 비차별적 무역, 민간부분과 함께하는 개도국에 대한 IT 신기술 제공, 필수 의약품 제공 및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시행 등을 세부목표로 설정
- 2002년 몬테레이 합의에서는 **원조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2003년 로마선언에서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조의 조화**가 강조되면서 효과성 중심의 논의가 활기를 띠음
 - 2002년 3월 멕시코의 몬테레이에서는 UN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앞으로의 국가개발을 위해서는 재원확충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공동 인식하고 이를 위한 **6가지 합의***를 도출(**Monterrey Consensus**)
 - * ①국내 금융재원의 확충, ②해외직접투자 유입액, 민간 및 공공부분의 투자활성화, ③국제무역의 활성화, ④**공적개발원조 재원의 확충**, ⑤효율적 대외채무관리 촉구, ⑥재정, 금융 및 무역시스템의 통합 및 일관성 제고
 - 특히, 4번째 합의에서는 원조재원 확충을 위해 궁극적으로 선진국(OECD 회원국 중심)이 GNP 대비 0.7% 수준까지 공적개발원조 지원액을 늘리기로 하고, 이 중 0.15% ~ 0.2%는 최빈국에 지원키로 합의
- 2003년 2월 로마에서는 2000년 UN의 MDG 및 2002년 몬테레이합의의 효과적 실천을 위해 **원조의 조화**를 강조한 **로마선언(Rome Declaration)**을 발표
 - 로마선언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였으며 원조 공여국들간의 공동원조 실행, 원조정책의 조화 등 **원조의 조화(aid harmonization)**를 강조

- 로마선언은 다양한 공여국의 서로 다른 원조절차 및 시스템이 수원국의 업무중복과 이에 따른 과도한 인적자원 소모를 야기시켜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떨어뜨린다고 명시하고 이의 시정을 위하여 수원국 중심의 수원국 시스템 개선작업을 촉구

□ 한편, 다자간 개발원조기구들은 2002년 6월과 2004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원조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음

- 2002년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은행, OECD 등 다자간 개발원조기구들은 성과중심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도입하기로 합의 ⇒ 제1차 성과회의(**the 1st results roundtable**)

* 성과중심의 관리(RBM)는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 측정 및 평가가 곤란한 공공부문에 적합한 조직성과관리 방법으로서 투입요소(input)보다는 성과(output / outcome) 그 자체에 중점을 두어 성과 달성을 이끌어 냄

☞ Results chain: Inputs → Activities → Outputs → Outcomes → Impact(goals)

- 또한, 2004년 2월 다자간 개발원조기구들은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성과중심 관리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공동합의서(**Marrakech Memorandum**)에 서명함 ⇒ 제2차 성과회의(**the 2nd results roundtable**)

- 동 합의서는 5대 기본원칙(**core principles**)*과 실행계획(**global action plan**)을 포함하고 있음

* 5대 기본원칙(The 5 Core Principles)

1. 개발원조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의 논의는 결과중심으로 구성할 것(Focus the dialogue on results)
2. 개발원조 계획의 수립, 시행, 모니터링 및 평가는 당초 수원국과 공여국이 합의한 개발원조사업의 결과달성과 관련된 것일 것(Align all activities with the agreed expected results)
3. 결과보고체계는 가능한 한 간단하고, 저비용구조이며, 사용자 편의적일 것(Keep the results reporting system as simple)
4. 결과에 의한(by) 관리보다는 결과를 위한(for) 관리를 실시할 것(Manage for, not by, results)
5. 개발사업결과에 관한 정보는 향후 개선방향 도출과 이해관계자들 앞 설명책임 완수에 사용할 것(Use results information)

II. 파리선언의 탄생 및 주요 내용

1.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의 탄생

- 2005년 2월 파리 고위급포럼(High Level Forum)*에서는 기존의 국제 원조사회의 합의사항들을 모두 포괄하여 원조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파리선언을 채택

* High Level Forum은 세계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 원조 실시기관, OECD, WB 등 국제기구, EURODAD 등 비정부 기구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 동 선언은 각국의 각료급 고위직 정부대표와 국제기구 및 비정부 기구가 참가한 국제선언으로 2000년 9월 UN의 새천년선언과 천년개발목표(MDG), 2002년 2월 몬테레이합의, 2003년 2월 로마선언, 2004년 2월 마라케쉬 합의사항을 모두 포괄

- 파리선언에는 총 131개 국가 또는 기관이 참여함

- 파리선언 참여자는 91개국 각료급 고위 정부대표(선진국 및 개도국 포함), 26개 국제기구(세계은행, OECD 등), 14개 비정부기구(개발원조 관련 NGO)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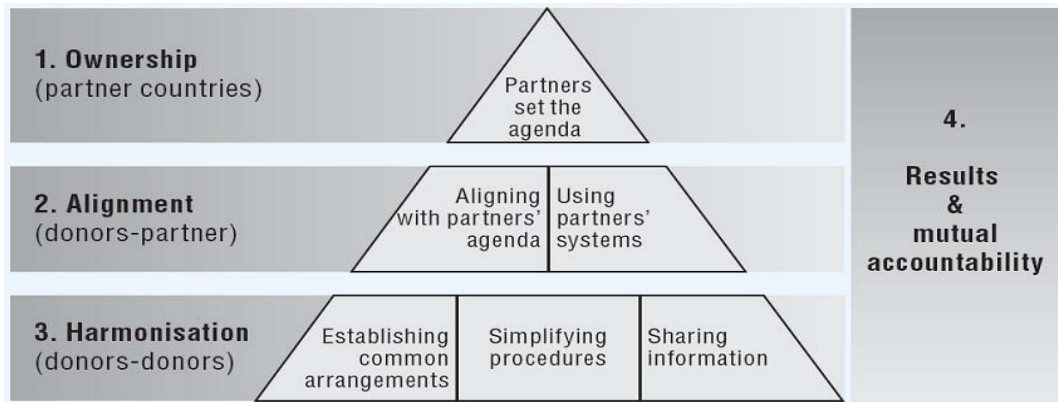
2. 파리선언의 주요 내용

- 파리선언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주인의식(Ownership), 연계(Alignment), 조화(Harmonization), 성과(Results), 책무성(Accountability) 등 5대 과제를 선정

①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 빈곤감축을 위한 국가개발계획은 공여국이 아닌 수원국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수립토록 하고 공여국은 수원국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이로써 향후 개발원조사업 수행시 수원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수원국 자체의 개발 관리능력 제고를 도모

파리선언의 5대 과제



②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 원조정책의 연계(Alignment)

- 공여국은 수원국이 수립한 국가개발전략과 일치된 지원전략을 수립
- 공여국은 수원국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고 원조제공시 동 시스템의 이용률을 높이며, 동 시스템의 관리·감독을 위한 별도기관을 수원국이 스스로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 공여국은 수원국이 중장기 개발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원조자금 집행계획 수립 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여기서 약정된 원조자금은 당초 계획대로 지원토록 노력
- 공여국은 2001년 OECD DAC의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권고2'의 정신을 계승하여 최빈국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언타이드화를 추진

③ 원조 공여국간 원조절차 및 실행의 조화(Harmonization)

- 공여국은 원조의 계획, 타당성 조사, 심사,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있어서 공동작업을 통해 수원국의 원조실행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이를 위해 프로그램 기반 접근방식(Programme Based Approach)³⁾의 원조지원 비중을 늘리도록 노력
- 또한, 개별 수원국에 파견되는 조사단(Field Mission)을 공동으로 구성함으로써 수원국의 관련비용 절감을 도모

④ 성과중심의 관리(Managing for Results)

2) '01. 4. 25일자 제정 및 '06. 3. 15일자 개정된 OECD DAC의 권고에 따라 DAC 회원국은 최빈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에 대한 원조는 언타이드화하기로 함
3)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 Programme Based Approach)란 프로젝트 건별 지원방식이 아닌 부문별 지원방식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붙임1의 주석4)를 참조

- 수원국은 원조성과에 중점을 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의 이행과정을 파악·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공여국은 수원국의 평가능력 제고를 위해서 관련 교육·훈련사업을 지원

⑤ 수원국과 공여국의 공동 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

-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은 수원국과 공여국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과업으로써 어느 일방의 책임이 아닌 공동 책임임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원국과 공여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평가작업을 활성화

Ⅲ.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파리선언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국제적 노력

- OECD DAC는 파리선언의 5대 과제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12개 진도지표를 선정
- 앞서 설명된 5대 과제는 선언적 형태의 목표이므로 OECD는 이러한 목표의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동 5개 과제와 연계된 12개 진도지표와 각각의 수량목표를 만들어 2010년까지 달성토록 합의

파리선언의 과제별 진도지표⁴⁾

5대 과제	12개 진도지표	
수원국의 주인의식	1	실행가능한 국가개발전략
공여국과 수원국의 연계	2	신뢰할 수 있는 국가재정관리시스템
	3	수원국 예산계획에 편성되는 원조
	4	능력개발활동의 조정
	5	수원국 정부시스템의 활용
	6	원조실행체제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수원국의 역량 강화
	7	원조의 예측가능성
	8	원조의 언타이드화
공여국간 원조의 조화	9	원조공여국간 공동의 제도와 절차
	10	공동분석의 장려
개발성과의 관리	11	결과지향적 체제
상호 책무성	12	상기 원조효과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

4) 파리선언의 12개 진도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붙임1 참조

- 1개 과제당 1~2개의 진도지표로 측정하나, 2번째 과제인 '공여국과 수원국의 연계(Alignment)'는 측정이 그리 용이하지 않아 7개의 진도지표가 배정됨
- 한편, 파리선언에 참가한 각국 고위급 정부대표는 OECD DAC 내에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를 담당할 하부조직(Working Party)을 신설하고 동 조직에게 12개 진도지표의 기준값(Baseline)을 도출하여 이를 점검하는 업무를 부여
- 이에 따라 DAC 하부조직은 '05. 5월, 7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12개 진도지표의 기준값 도출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는바, 최종적으로는 8월 보고서 수치를 1차 기준값으로 확정
- 한편, **OECD와 세계은행**은 2006년과 2008년에 파리선언 이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공동 실시**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OECD DAC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2006년 중 31개 국가를 대상으로 파리선언 이행상황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2005년 8월의 1차 기준값에 대한 검증작업 및 이행상태를 모니터링 한 바 있음
⇒ 12개 진도지표에 대한 2006년 Survey 결과는 붙임2 참조
- 2006년 이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잠정치)는 진도지표 7번과 9번 지표를 제외하고는 2005년 8월 기준값에 비해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파리선언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지역별 노력(아시아지역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주요 빈곤지역에서는 다자간 개발원조기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파리선언 이행사례 연구를 통해 경험 및 정보 공유에 노력 중
- ADB, AfDB, IDB 등 지역개발금융기구는 각국의 파리선언 이행사례를 연구·조사하여 **지역포럼(Regional Forum)**을 통해 널리 전파
- 동 기구들은 이러한 지역포럼을 파리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수원국 또는 공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로 활용
- 지역포럼은 지금까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지역에서 총 5차례 개최됨

- 말리 Bamako('05.3.27~29), 남아프리카공화국 KwaZulu Natal('05.9.26~27), 우간다 Entebbe('05.11.16~17), 볼리비아 Santa Cruz('06.10.9~11), 필리핀 Manila('06.10.18~20) 등

□ 특히, 최근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시아 지역포럼에는 가장 많은 관계자가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의 파리선언 이행사례를 대대적으로 발표

- '06년 10월 필리핀 마닐라의 ADB 본점에서는 지금까지 축적된 아시아 지역의 파리선언 이행사례 연구 결과를 발표
 - 동 지역포럼은 ADB, 일본 외무성, 영국 DFID, 세계은행 등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21개 수원국(73명), 19개 공여국(48명), 6개 다자기구(15명), ADB(6명), 일본 외무성(10명), 세계은행(13명), OECD DAC(4명) 등 총 169명이 참여
 - 회의진행은 주최측이 아닌 수원국 공무원이 직접 주재하도록 하여 수원국 정부의 참여효과를 극대화함
 - 이번 포럼에서는 아시아 지역 7개국 약 12개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중 6개국 10개 사례에 대해서 상세히 발표

주요 아시아 국가별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사례

① 방글라데시

사업명	참여기관	사업내용	기대효과
JCS ^{주1)} 수립	세계은행, ADB, JBIC ^{주2)} , DFID ^{주2)}	- 네 기관과 방글라데시 정부는 공동으로 국가개발전략을 수립('04년) - 동 전략에 따른 기관별 전략 개별 수립 후 '05년부터 적용	- 수원국 정부의 비용 및 업무부담 경감
FMRP ^{주3)}	DFID	- FMRP 수립을 위한 무상지원 실시	- 수원국의 업무능력 배가

주1 : JCS(Joint Country Strategy)

주2 :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국제협력은행),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영국 국제개발국)

주3 : 국가 재정관리프로그램(Financial Management Reform Program)으로 재정의 계획, 수입, 지출, 보고서작성 및 평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② 캄보디아

사업명	참여기관	사업내용	기대효과
분야별 지원Group 운영	세계은행, ADB, AFD ^{주)} ,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개발을 농업, 교육, 인프라, 보건 등으로 구분한 후 분야별로 참여기관 모집하여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 - 분야별 및 공여국별로 지원규모와 시기 등을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전략수립 용이 - 분야별 공여국간 분업을 통한 비용절감
JCS 수립	세계은행, ADB, DFID, 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기관과 캄보디아 정부는 공동으로 국가개발전략 및 이에 따른 개별 기관별 지원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 정부의 비용 및 업무부담 경감

주 : AF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프랑스개발청)

③ 인도네시아

사업명	참여기관	사업내용	기대효과
지방분권화 지원기금 조성	세계은행, ADB, AusAID ^{주)} , CIDA ^{주)} , DFID, GTZ ^{주)} , 네덜란드, UNDP ^{주)} , USAID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도시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기금 조성(53백만불) - 참여기관으로부터의 파견자 및 컨설턴트로 지원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여국간 분업을 통한 비용 절감 - 중복지원 등 회피 - 참여기관을 통한 원활한 자금유치 가능
쓰나미 피해복구 기금	세계은행 등 총 15개 국가 또는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나미 피해복구 5개년 계획 수립(총 5.4억불) - 긴급구호→이주→재건설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 피해복구 기대

주 : AusAID(Australian Government's Overseas Aid Program;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해외원조프로그램), CIDA(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캐나다국제개발청), GTZ(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독일기술협력공사),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국제연합개발계획),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청)

④ 파키스탄

사업명	참여기관	사업내용	기대효과
편잡주 공공서비스 개선프로그램	세계은행, ADB, DFID	- 편잡주의 공공서비스 개선 전략 공동 수립 - 편잡주 지방정부에 대한 공동 교육, 훈련프로그램 수립	- 공여기관 간 분업을 통한 비용절감 도모

⑤ 필리핀

사업명	참여기관	사업내용	기대효과
조달시스템 개선	세계은행, ADB, AusAID, CIDA, EU, JBIC, UNDP, USAID	- 공공 조달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 관련 교육, 훈련 지원	- 공여기관 간 분업을 통한 비용절감 도모 - 향후 동시스템을 활용한 원조지원 가능

⑥ 베트남

사업명	참여기관	사업내용	기대효과
빈곤감축지원 프로그램	세계은행 외 총 18개 국가 또는 기구	- 빈곤감축 관련 1차 프로그램 지원('01-'05년중 2.2억불) - 2차 프로그램 수립('06-'10년) - 분야별 공여국 회의 신설	- 베트남 앞 모든 원조유입액 사전조정을 통한 원조 효과성 제고 - 중복지원 등 회피
HCS ^{주)} 수립	베트남 정부 주도	- 베트남에 유입되는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14개 진도지표 설정(파리선언의 변형) - 부문별 주요 공여국/기관 선정을 통한 조정역할 강화	- 베트남 앞 모든 원조 공여국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 - 동 지표달성을 위한 소규모 공여국모임 형성을 통한 부문별 지원강화

주 : HCS(Hanoi Core Statement on Aid Effectiveness)는 파리선언을 베트남 실정에 맞도록 각각의 진도지표를 변형하여 설정한 베트남식 파리선언으로 '05. 6월 공여국회의에서 채택된 후 9월 베트남 정부로부터 승인

- 한편, 이번 지역포럼에서는 파리선언 이행사례 발표 외에 **파리선언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함
 - 수원국은 자국 공무원에 대한 많은 교육 및 훈련 기회제공, 각 수원국에 설치된 공여국 지역사무소에 대한 권한이양 등을 요구
 - 공여국은 수원국 정부차원의 부패방지노력, 원조사업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
 - 아울러, 포럼 참가자들은 신흥원조공여국도 파리선언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촉구

IV. 우리나라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 파리선언은 국제원조사회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채택한 국제적인 선언이자 약속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는 원조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원조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우리나라는 OECD DAC 비회원국이나 파리선언에는 이미 참여국으로 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음
-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의 5대 과제**는 우리나라의 ODA 정책 수립 및 절차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예컨대, EDCF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와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올해 중점지원국가에 대한 국별지원계획(Country program)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대상국가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공여국간의 원조 조화(Harmonization)를 위해서는 국제개발기구 및 타 공여국 원조기관과의 **협조유자를 통한 개도국 개발사업의 공동 지원 추진이 필요**
- 대규모 사업발굴, 원조사업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는 타 공여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조유자 추진이 필요**

- 우리나라의 전체 원조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소규모('05년 기준 약 7.5억불 수준)인 관계로 원조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을 단독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타기관과의 협조용자가 필요
- 타 원조기관과의 공동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과의 업무협력이 중요하나 수원국과의 정책협의 또한 중요
 - 파리선언 이후 수원국의 주요 개발계획은 공여국이 아닌 수원국 중심으로 수립되므로 수원국과의 정책협의 강화는 대규모 사업 정보 입수, 타 원조기관과의 공동지원 등을 용이하게 함
- 한편, 주요 양자간·다자간 개발원조기구들과의 업무협력 강화는 부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원조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
 - * JBIC, KfW, AFD 등 양자간 기구와 IDA, ADB, AfDB, IDB 등 다자간 기구
 - 양자간·다자간 개발원조기구들과의 업무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각종 국제회의, 포럼, 세미나 등에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
-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원조수혜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과거 수원경험은 수원국이 개발원조의 계획, 실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큰 교훈을 제공해 줄 수 있음
 - 선진국의 원조를 잘 활용하여 경제개발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모델은 수원국 중심의 개발전략 수립 및 추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개도국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도국 공공기관과의 업무협력 등을 크게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원조수혜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파리선언의 이행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조공여 노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05년 2월 파리선언 이후 OECD DAC 및 MDB를 중심으로 파리선언의 이행 과정에 대한 사례분석과 이에 따른 교훈 도출 및 정보 공유 등이 활발해 짐

- 우리나라도 이 같은 논의에 보다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조공여 의지와 노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향후 실시되는 파리선언 관련 설문조사, 지역포럼(Regional Forum), 세미나 등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됨
 - '08년에는 파리선언에 대한 고위급회의(아프리카 가나) 및 2차 Survey가 실시될 예정임
- 원조효과성 제고에 필요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다하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 및 동 평가결과의 수원국 앞 환류시스템 구축이 필요
- 현재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 ODA 종합 평가뿐 아니라 개별 원조지원기관(유·무상 포함)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평가 시에도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이렇게 얻어진 평가결과는 국내 관계자는 물론 수원국 정부, 사회단체(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앞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공동세미나 개최, 관련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대외공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붙임 : 1. 파리선언의 12개 진도지표에 대한 요약 설명
2. 파리선언의 12개 진도지표에 대한 2006년 Survey 결과 요약

작 성 : 엄 성 용, syum@koreaexim.go.kr

목차보기

5) 성과중심의 평가란 사업 심사단계에서 사업추진의 구체적인 목표를 수원국 정부와 함께 수립하는 것(Ex-ante Evaluation)부터 실행과정에서의 모니터링, 사업완공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업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붙임1)

파리선언의 12개 진도지표에 대한 요약설명

과제	진도지표	지표내용	2010년 수량목표		
수원국의 주인의식	1	실행가능한 국가개발전략	1	실행가능한 국가개발전략을 갖는 수원국의 수	세계은행의 포괄적 국가개발계획(CDF) ¹⁾ 의 기준치를 넘는 국가의 수가 75% 이상
공여국과 수원국의 연계	2	신뢰할 수 있는 국가재정관리시스템	2a	세계은행 CPIA 평가 중 신뢰할 수 재정관리체제(PFM/CPIA) ²⁾ 척도의 상황	수원국중 50%가 0.5단위 1(최저)~6(최고)범위의 척도중 최소 1등급(0.5) 상황
			2b	신뢰할 수 있는 조달시스템	수원국중 1/3이 A(최고)~D(최저) 4단계 등급 중 1단계 상황
	3	수원국 예산계획에 편성되는 원조	3	수원국 회계연도중 유입예정된 원조총액중 동국 예산계획에 편성된 원조	최소 85%이상의 원조가 예산계획에 편성
	4	능력개발활동의 조정	4	수원국에 대한 기술협력의 총규모 중 능력개발활동지원을 위한 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비중	기술협력규모의 1/2을 국가개발전략과 부합하는 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5	수원국 정부시스템의 활용	5a ⁱ	수원국 재정관리체제를 활용하는 원조유입액의 비중	수원국 재정관리체제를 활용하지 않는 원조유입액비중의 2/3 (PFM/CPIA 점수 5이상인 수원국) 또는 1/3 (동 점수 3.5~4.5인 수원국) 축소
			5a ⁱⁱ	수원국 재정관리체제를 활용하는 공여국의 비중	100%(PFM/CPIA 점수 5이상인 수원국) 또는 90%(동 점수 3.5~4.5인 수원국)
			5b ⁱ	수원국 조달체제를 활용하는 원조유입액의 비중	수원국 조달체제를 활용하지 않는 원조유입액비중의 2/3 (A등급 수원국) 또는 1/3(B등급 수원국) 축소
			5b ⁱⁱ	수원국 조달체제를 활용하는 원조공여국의 비중	수원국 조달체제를 활용하지 않는 원조공여국비중의 100%(A등급 수원국) 또는 90%(B등급 수원국) 축소
	6	원조실행체제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수원국의 역량 강화	6	중복 설치된 원조실행기구(PIU) ³⁾ 의 수	중복 설치된 PIU를 현재의 2/3이하로 축소
	7	원조의 예측가능성	7	해당회계년도 중 유입 예정된 원조금액중 실제집행된 금액	미집행금액 비중을 1/2로 축소
8	원조의 언타이드화	8	이국간 원조 승인총액 중 언타이드 원조의 비중	지속적으로 개선 (구체적 수량목표 없음)	

공여국간 원조의 조화	9	원조공여국간 공동의 제도와 절차	9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 ⁴⁾ 으로 실행되는 원조의 총 원조액 대비 비중	66%
	10	공동분석의 장려	10a	개별수원국에 파견되는 공여국 조사단(field mission) 중 공 동 또는 대표 1개국이 수행하 는 조사단	공여국 조사단 총수의 40%를 공동/대표조사 형태로 구성
			10b	국가분석보고서 총수중에서 합동 또는 대표국에 의해 수행 되는 보고서의 수	국별분석작업의 66%를 합동 (joint)으로 수행
개발성과의 관리	11	결과지향적 체제	11	투명하고 이행점검가능한 성과 평가의 틀을 갖춘 수원국의 수	CDF 중 성과평가와 관련 된 기준에 의거, 적절한 성과 평가의 틀을 갖춘 수원국 ⁵⁾ 비중 32%로 축소
상호책무성	12	상기 원조효과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	12	진도점검을 위한 상호평가를 수행하는 수원국의 총수원국에 대한 비중	100%

- 1) CDF(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세계은행에서 조사하는 지표로써 한 국가의 개발 계획이 장기적 목표는 설정되었는지, 동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목표는 있는지, 동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계획은 실행가능한지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총 20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
- 2) PFM(Public Financial Management)/CPIA(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세계은행에서 조사하는 지표로써 한 국가의 재정관리시스템이 정책 우선순위, 예산의 수입 및 지출 등과 연계되어 있는지, 예산관련 보고 및 감시체계는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지표임3) 중복설치된 PIU(Project Implementation Unit): 기존 정부조직 또는 정부조직 내 원조실행기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된 원조실행기구
- 3) 중복설치된 PIU(Project Implementation Unit): 기존 정부조직 또는 정부조직 내 원조실행기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된 원조실행기구
- 4)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 Program Based Approach): 개별 프로젝트 단위의 지원이 아닌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문별 개발(예, 전력부문, 교육부문, 도로부문 등)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PBA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a)수원국 정부 또는 정부기구에서 수립한 계획에 근거해야 하고, b) 포괄적인 계획이어야 하며, c)공여국간 조율을 통해 계획, 실행, 보고 및 구매 절차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며, d)수원국의 자체적인 계획, 실행, 재정관리, 점검 및 평가시스템을 사용토록 노력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5) CDF 중 성과평가체계와 관련된 기준은 a)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준, b)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동 개발 정보에 접근 용이성, c)조화된 국가수준의 모니터링 또는 평가체계의 세 가지로 적절한 수준이라 하면, 평가대상국가의 성과평가시스템이 앞선 세 가지 기준에 매우만족 또는 만족하는 수준을 달성한 것을 의미

(붙임2)

파리선언의 12개 진도지표에 대한 2006년 Survey 결과 요약

(’06. 11. 23일 현재 잠정치)

진도지표		’05년 기준	’06년 Survey 결과	2010 목표
1	실행가능한 국가개발전략	9%	19%	75%
2a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재정관리시스템	N/A	26% (적절한 시스템 보유)	50%의 수원국 접수 향상
2b	신뢰할 수 있는 조달시스템	N/A	N/A	1/3의 수원국 접수 향상
3	수원국 예산계획에 편성되는 원조	95%	90% ¹⁾	95%
4	능력개발활동의 조정	27%	43%	50%
5a	국가 재정관리시스템의 이용을 제고	N/A	37%	79% ²⁾
5b	국가 조달시스템의 이용을 제고	N/A	35%	57% ²⁾
6	중복되는 원조실행기구 축소	1,652	1,637	546
7	원조의 예측가능성 제고	80%	65%	82%
8	원조의 언타이드화	41%	64%	지속적 개선
9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 원조	43%	42%	66%
10a	수원국 앞 공동/대표조사단 비율 제고	15%	32%	40%
10b	공동 국별분석보고서 비율 제고	30%	51%	66%
11	적절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4%	22% (적절한 시스템 보유)	68%
12	수원국과 공여국의 공동평가 수행	9%	43%	100%

- 1) 동 지표의 경우 결과값의 변동성이 높은 바, 그 원인으로는 a)수원국의 통계수치의 불완전성, b)공여국의 데이터 오류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향후 동 지표값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설문조사방식의 보완이 요구됨
- 2) 동 지표의 2010년 목표는 2a 지표값에 따라 변동되는 바, 79%의 목표값은 조사시점에서의 2a 지표값을 사용한 수치임
- 3) 동 지표의 2010년 목표는 2b 지표값에 따라 변동되는 바, 57%의 목표값은 조사시점에서의 2b 지표값을 사용한 수치임

주요토픽

OECD의 원조관련 주요 개념 및 최근 논의 동향

【요약】

- 국제원조사회의 ODA 논의를 주도하는 OECD의 원조관련 조직 및 규범, 원조 관련 주요 개념 등을 살펴보고 최근 ODA 논의동향을 정리
- OECD내 원조와 관련된 위원회는 개발원조위원회(DAC)와 무역위원회(TC)로 두 위원회는 원조에 대한 기본 접근법이 상이
- OECD에서 사용되는 원조관련 주요 개념은 원조의 정의, ODA/GNI비율, 양허성, 적격국가, 상업성 등을 들 수 있음
- 최근 논의되는 주제는 ODA 규모의 확대, 원조 효과성 제고, 언타이드 확대, 언타이드 원조의 투명성 제고, 신흥원조공여국에 대한 대응 등

1. OECD와 공적개발원조

- 1961년에 설립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69년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을 정립한 이후 국제원조사회의 ODA 논의를 계속 주도하고 있음
- 특히,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전세계의 ODA 논의를 주관하며 ODA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DAC는 세계은행, IMF, 지역개발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조관련 이슈들을 공동으로 연구·대응하고 있음
- 본 고에서는 국제사회의 ODA를 총괄하고 있는 OECD의 국제개발협력 노력을 아래와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OECD의 원조관련 조직 및 규범
- OECD의 원조관련 주요 개념
- OECD의 최근 논의주제

2. OECD의 원조관련 조직 및 규범

가. 원조관련 조직

- OECD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Council)와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제외하면, 정책대화 기구인 '위원회'와 행정지원 조직인 '사무국'으로 대별됨
 - **위원회(Committee)**는 회원국간 정책대화 기구로서 산하에 소관 과제 중 하나 혹은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형태의 작업반(Working Party/Group/Network/Programme)을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함
 - **사무국(Secretariat)**은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회의개최와 사업추진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사무총장 1인이 4인의 사무차장의 보좌를 받아 사무국을 지휘·감독함
 - 사무국은 이사회 및 위원회의 집행부서이나 전문적 분석과 각종 문서의 작성 및 회원국간 중재자 역할을 통해 큰 영향력을 행사
- OECD의 26개 위원회 중 ODA와 직접 관련되는 위원회는 개발원조위원회(DAC)와 무역위원회(TC)임
 - **DAC**은 국제원조사회의 ODA 논의를 주관하며 ODA 통계를 취합·발표하고 있음
 - DAC는 회원국 원조정책에 대한 정기 검토, ODA 통계분석, 개도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회원국 원조정책 조율 등을 수행하며 원조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성장 및 복리증진에 노력
 - **TC**는 무역질서 왜곡 방지를 위해 무역관련 타이드 원조(trade-related tied aid)를 규제하고 있음
 - TC는 다자무역체제 강화, 비회원국과의 협력체제 강화, 공정한 수출신용체제 확립 등을 도모하면서 공적 지원(원조 포함)에 의한 무역질서 왜곡 방지를 통해 공정경쟁의 장을 조성하는데 주력

※ OECD 내 ODA와 관련된 위원회와 사무국

- 무역위원회(TC) → 무역국(TD: Trade Directorate)⁶⁾
- 개발원조위원회(DAC) → 개발협력국(D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나. 원조관련 규범

□ 원조를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OECD의 규범은 다수이나 주요 규범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개발원조위원회 소관 규범과 무역위원회와 소관 규범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① 개발원조위원회(DAC) 소관 규범

- 원조 공여조건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 1972년 제정, 1978년 개정)
 - ODA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각 공여국이 원조의 공여조건을 완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972년 DAC 고위급회의(HLM)에서 채택된 권고
 - 동 권고는 개별 원조의 공여조건이 아닌 각 공여국의 전체 원조의 평균적 공여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ODA의 기본정의, 일반 공여조건, 최빈국앞 특별 공여조건 등을 포함
- 혼합신용과 타이드 및 부분언타이드 ODA에 대한 원칙(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DA: 1987.4 제정)
 - 원조가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발생하는 무역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원조의 개발지원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DAC가 1987년 4월에 채택
 - 동 원칙은 혼합신용과 타이드 및 부분언타이드의 정의, 투명성 확보, 상호사후조사 실시, 수출신용협약 준수, 개발우선사업 지원, ODA 통계보고 등을 강조
-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권고(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LDCs: 2001.4 제정, 2006.3 개정)

6) 최근 OECD는 사무국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2006.12.1자로 무역국(TD)을 농업국(Directorate for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으로 흡수통합하기로 하였으나 기존의 무역국 내 4개 과(Division)는 그대로 유지하며 업무내용에도 변화가 없음 (통합된 국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 언타이드 원조의 확대를 위해 DAC 회원국만이라도 **최빈국에 대해서는 원조를 언타이드화**하라는 권고로 2001년 4월 DAC HLM에서 채택됨
- 동 권고는 권고의 목적 및 원칙, 적용대상, 구매방법,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통보방법, 감독 및 평가 방법 등을 명시

② 무역위원회(TC) 소관 규범

- 수출신용협약(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1978.4 제정, 2005.12 개정)
 - 공적수출신용 및 무역관련 원조가 초래하는 **무역질서 왜곡을 방지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1978년 4월 참가국 합의하에 제정된 협약
 - 동 협약은 수출신용의 금융조건, 타이드 원조에 관한 규정, 통보 및 협의 절차, 부문별 양해⁷⁾ 등으로 구성
- 타이드 원조에 대한 사전지침(Ex Ante Guidance for Tied Aid: 1996 제정, 2005.4 개정)
 - 1992년 2월 상업성 있는 사업에 대한 타이드 원조를 금지한 Helsinki package 도입이후 4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상업성 유무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지침**
 - 동 지침은 주요 분야별 상업성 유무 현황, 재무적 사업성 측정 방법, 프로젝트의 정의 등을 포함
-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합의(Agreement on Untied ODA Credits Transparency: 2004.11 제정)
 - 언타이드 차관의 실질적 타이드化를 막고 원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1월 제93차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에서 채택된 합의로서 2년간 (2005.1~2006.12)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동 합의는 언타이드 원조신용(기술협력 포함)에 대한 사전통보 및 사후통보 강화, 국제경쟁입찰 방식 사용 등을 골자로 함

※ OECD 위원회와 우리나라의 관계

7) 선박·핵발전소·민간항공기·재생가능에너지 및 수자원프로젝트 등 특정부문에 대한 양해(sector understanding)로서 수출신용협약의 첨부자료를 구성

- DAC : 우리나라가 OECD 산하 26개 위원회 중 유일하게 가입하지 않은 위원회로 ODA 규모, 증여율, 언타이드 수준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 TC : 우리나라는 OECD 가입시부터 수출신용협약 참가국으로 참여하여 수출신용 및 무역관련 원조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3. OECD의 원조관련 주요 개념

가. 원조의 정의

□ OECD가 원조를 지칭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공적개발원조(ODA)'로 원조의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1969년 OECD DAC는 공적자금(Official Flows)*을 ODA와 OOF**로 분류하면서 ODA 개념을 최초로 정립

* OECD는 개도국에 대한 자금흐름(flow of financial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ies)을 공여주체에 따라 공적자금과 민간자금(Private Flows)으로 구분

** OOF(Other Official Flows)는 ODA에 속하지 않은 공적수출신용 등 기타공적자금을 지칭

- 1972년 금융조건 개정 권고안(Revised DAC terms recommendation)의 일부로 ODA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정의를 채택하여 현재까지 유효

- 공여주체 : 공여국의 공공기관 및 이의 집행기관
- 공여대상 : OECD DAC가 인정하는 개도국 및 국제기구
- 공여목적 :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
- 공여조건 : 상업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증여율이 25% 이상)

□ 한편, OECD는 ODA 개념을 정립하기 이전부터 원조를 지칭하는 Aid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아직도 널리 쓰이고 있음

- Aid라는 용어는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ODA와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ODA의 일정 부분만을 가리키거나 ODA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

- 예컨대, OECD 수출신용협약 31조 타이드 원조의 형태(Forms of tied aid)에서 aid는 ODA 차관, ODA 증여, OOF(수출신용 제외) 등을 가리킴

나. ODA/GNI 비율

- OECD는 원조공여국의 ODA 규모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 ODA/GNI 비율을 사용
 - 동 비율은 국민총소득(GNI)에 대한 원조규모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공여국이 소득의 어느 정도를 원조로 지출하고 있는가를 표시
 - 공여국의 상대적인 ODA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ODA/GNI 비율이외에 '국민 1인당 ODA'를 사용하기도 함
- 한편, OECD DAC는 회원국에게 일정수준의 ODA/GNI 비율 목표를 제시하고 각 회원국의 동 비율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음
 - OECD DAC는 '70년 9월 UN이 제시한 ODA 기본 목표(GNP 대비 0.7%)를 채택하여 '89년 12월 '1990년대 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성명'에서 GNP 대비 0.7%의 ODA 공여기준을 권고
 - 그 후 2001년부터는 공식적으로 국민총생산(GNP) 대신 국민총소득(GNI) 개념을 사용하여 ODA/GNI 비율을 계산
 - 2005년도 DAC 회원국의 평균 ODA/GNI 비율은 0.33% 수준

다. 양허성(Concessionalty)

- OECD는 원조의 지원조건이 일반 상업금융에 비해 얼마나 유리한지를 나타내기 위해 '양허성'이라는 개념을 사용
 - OECD는 원조 공여조건(이자율, 거치기간, 만기 등)을 재무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차관액과 차관원리금 상환액의 현가(할인율: 10%) 간의 차액이 차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즉, 무상으로 지원되는 비중임)
 - ① 증여율(Grant Element: GE)
 - GE는 원조의 공여조건(이자율, 거치기간, 만기 등)을 재무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차관액과 차관원리금 상환액의 현가(할인율: 10%) 간의 차액이 차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즉, 무상으로 지원되는 비중임)

☞ 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 GE는 1969년에 원조의 양허성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등장하였고 1972년부터 GE 25%이상의 원조만을 ODA로 정의
- GE는 원조통화의 종류나 승인시기에 관계없이 10%의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출

② 양허성 수준(Concessional Level: CL)

- CL은 기본적으로 GE와 동일한 개념이나, 원조통화의 종류나 승인시기에 관계 없이 일률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GE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
 - * GE는 원조통화의 금리수준 차이에 따른 실제 양허성 수준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
- OECD가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상업참고금리(CIRR)*를 활용하여 1987년부터 **통화별로 원조의 지원조건 완화도를 표시하기 위해 CL을 사용**
 - * CIRR(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 : OECD가 상업금융시장의 관행 및 시장금리 수준을 금융지원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통화별 시장금리'로서 표시통화국의 국채수익율에 1%를 가산한 수준으로 결정(OECD 사무국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고시)
- CL은 기본적으로 통화별 CIRR을 사용*하므로 결과적으로 원조통화별로 서로 다른 할인율이 적용하게 됨
 - * 매년 초 통화별로 CIRR에 일정한 Margin을 더한 할인율[차등할인율(Differential Discount Rate: DDR)]을 산정하여 1년 동안 할인율로 사용

□ OECD DAC는 원조 공여조건 개선을 위해 원조공여국의 ODA가 **일정수준의 증여율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DAC는 각 회원국이 ODA 승인건의 평균 GE가 86%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
 - 다만, 최빈국에 대해서는 ① 개별국가별로 3년간 GE 86% 이상, 또는 ② 최빈국 전체에 대해 매년 GE 90% 이상을 권고

□ 한편, OECD는 무분별한 타이드 원조에 의한 무역질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신용협약에서 타이드 원조에 대한 **최저 양허성 수준 (Minimum concessional level)**을 설정해 두고 있음

- OECD는 타이드 원조의 개별 승인건이 CL 35% 이상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
 - 다만, 최빈국에 대해서는 CL 50% 이상을 요구

라. 적격국가(Eligible countries)

- 'ODA 적격국가'는 ODA를 수혜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말하며 OECD DAC가 인정하는 개도국만이 이에 해당
 - ☞ 상세내용은 붙임2 참조
- ODA 적격국가는 대체로 고소득국을 제외한 중소득국 이하의 국가들로 정하고 있음
 - 2005년부터 적용되는 ODA 적격국가는 UN이 정한 최빈국, 세계은행이 정한 저소득국, 하위중소득국, 상위중소득국 등 4개 그룹으로, 2004년 1인당 GNI 기준 10,065달러 이하인 국가들
- OECD는 세계은행의 '분석목적의 소득그룹별 국가분류'를 근거로 매 3년마다 개정하여 사용
 - 2005년 말에 개정된 ODA 적격국 목록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적용됨 → 즉, 2005, 2006, 2007년의 ODA실적 보고에 사용됨

【참고】 세계은행의 국가분류

- 지원조건 결정을 위한 국가분류(Operational lending categories)
 - 세계은행은 1인당 GNI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지원조건을 적용
 - Civil Works Preference(2005년 기준 875달러 이하), IDA Eligibility & 20-year IBRD Terms(876~1,675달러), 17-year IBRD Terms(1,676~3,465달러), 15-year IBRD Terms(3,466~6,055달러), IBRD Graduation(6,055달러 초과)
- 분석목적의 소득그룹별 국가분류(Analytical classifications)
 - 세계은행은 분석목적에 위해 전세계 국가들을 1인당 GNI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사용 중
 - 저소득국(LICs: 2005년 기준 875달러 이하), 하위중소득국(LMICs: 876~3,465달러), 상위중소득국(UMICs: 3,466~10,725달러), 고소득국(HICs: 10,725달러 초과) 등

- 한편, '타이드 원조 적격국가'는 타이드 원조 수혜가 가능한 국가를 말하며 OECD는 수출신용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OECD의 수출신용협약은 수출촉진 목적으로 사용되는 타이드 원조에 대한 규제조치의 일환으로 타이드 원조는 개발재원 확보가 어려운 저소득 국가에만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타이드 원조 적격국가는 IBRD의 17년 만기 차관지원이 가능한 국가들(2005년 1인당 GNI 기준 3,465달러 이하)
 - 다만, OECD는 ① CL 80% 이상인 타이드 원조, ② 최빈국(LDC)에 대한 타이드 원조 등은 예외로 인정하여 적격국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OECD는 세계은행의 '지원조건 결정을 위한 국가분류'를 이용하여 타이드 원조 적격국을 매년 7월에 변경하여 발표

마. 상업성(Commercial viability)

- OECD는 타이드 원조에 의한 무역질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신용협약에서 타이드 원조는 상업성이 없는(Commercially Non-Viable) 프로젝트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 프로젝트 적격성(Project eligibility) 기준
- 상업성이 있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출금융이나 일반 상업금융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조공여국이 자국의 수출촉진을 위해 타이드 원조자금을 사용한다면 심각한 무역질서 왜곡이 초래됨
- OECD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1992년부터 소위 헬싱키 패키지(Helsinki package)를 수출신용협약에 도입하여 상업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이드 원조를 금지하고 있음
- 다만, OECD는 ① CL 80% 이상인 타이드 원조, ② 2백만 SDR 미만의 타이드 원조, ③ 최빈국(LDC)에 대한 타이드 원조 등은 예외로 인정하여 상업성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하도록 규정
- OECD에 통보된 특정 원조사업이 상업성 시비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프로젝트의 상업성 유·무는 두 가지 상업성 테스트를 거쳐 판정됨
 - 1차로는 재무적 사업성(Financial Viability)을, 2차로는 금융조달 가능성(Cover Availability)을 검증함

- 상업성 시비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둘 중 한 가지 테스트만 통과한다면 상업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

Key test 결과에 따른 상업성 판정표

Key Tests			2nd Key Test	
			Cover Available?	
			Yes	No
1st Key Test	Financially Viable?	Yes	CV	CNV
		No	CNV	CNV

* CV: Commercially Viable, CNV: Commercially Non-Viable,

① 1차 테스트(Financial Viability) : FV or FNV ?

- 재무적 사업성 여부, 즉 프로젝트가 재무적 측면에서 실현가능한 것인지 여부 (쉽게 말하자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
-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된 적정가격에 기초하여 **표준수출신용기간(10년) 동안** 프로젝트 운영비와 투입자본(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지 여부

② 2차 테스트(Cover Availability) : CA or CNA ?

- 다른 참가국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이 프로젝트가 시장조건이나 수출신용협약상 조건으로 지원가능한지 여부

4. OECD의 최근 논의주제

가. ODA 규모의 확대(Scaling up)

- 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며 계속 늘어날 전망
- 2005년 DAC 회원국의 ODA 규모(순지출 기준)는 전년대비 34%나 증가한 **1,06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DAC 회원국의 2005년 평균 ODA/GNI 비율은 **0.33%**로 전년대비 0.07% 포인트 증가

- 향후 ODA 규모는 소폭 줄어들다가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는 **1,318억 달러(ODA/GNI 비율 0.36%)**에 이를 전망
 - 2006~2007년에는 채무구제 감소로 ODA가 다소 줄어들겠으나 2008년 이후에는 공여국들의 ODA 확대약정 이행에 따라 점차 증가할 전망
- OECD DAC는 MDG 달성을 위해 회원국들의 **ODA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DAC는 회원국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매년 2차례의 정기회의*에서 **ODA 규모 확대를 주요 의제의 하나로 다루고 있음**
 - * 매년 4월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와 12월 중견관리자회의(Senior level meeting)
 - DAC는 회원국들의 ODA/GNI 비율 수치를 매년 공개하며 국제기구의 공동 목표치와 회원국의 개별 목표치 달성을 독려
 - UN이 제시한 ODA/GNI 비율 목표(0.7%)를 달성한 국가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주로 북유럽 국가
 - EU가 정한 EU 국가별 최저 ODA/GNI 비율(0.33%)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는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나. 원조의 효과성(Aid effectiveness) 제고

- 2000년대 들어 국제원조사회는 원조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원조의 질적 수준 제고, 특히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 2003년 2월 로마에서 처음 개최된 고위급포럼(High Level Forum)*에서는 원조의 조화(aid harmonization)를 강조한 **로마선언(Rome Declaration)**을 채택
 - * High Level Forum은 세계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 원조 실시기관, OECD, WB 등 국제기구, EURODAD 등 비정부 기구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 로마선언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여국간 원조정책의 조화, 공동원조 실행 등을 강조
 - 2005년 3월 프랑스 파리의 고위급포럼에서는 효과적인 원조 공여를 위해 원조 효과성에 관한 5대 원칙*을 담은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채택

*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정책의 일치(Alignment), 원조공여국간 원조정책의 조화(Harmonization), 개발성과 중심의 경영(Managing for Results),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등

- 파리선언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97개 국가, 22개 국제기구, 14개 민간기관이 서명

□ OECD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지표개발, 중간점검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수행 중

○ OECD DAC는 2005년 7월 파리선언의 5대 원칙을 2010년까지 이행하기 위한 12개 진도지표* 및 진도지표별 수량목표를 설정

* 실행가능한 국가개발전략, 신뢰할 수 있는 국가재정관리시스템, 수원국 예산계획에 편성되는 원조, 능력개발 활동의 조정, 수원국 정부시스템의 활용, 원조실행체제 중복 방지를 통한 수원국의 역량강화, 원조의 예측가능성, 원조의 언타이드화, 원조공여국간 공동 제도와 절차, 공동 분석의 장려, 성과지향적 체제, 상호평가 실시 등

○ 파리선언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OECD와 세계은행(WB)은 2006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

- OECD는 2006년 중간점검을 위해 최근 수원국 및 공여국에 대한 설문 조사(총 31개국 참여)를 완료하고 최종결과 발표를 준비 중

다. 언타이드 원조의 확대(Untying aid)

□ 국제원조사회에서는 원조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원조의 언타이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언타이드 원조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개도국 개발사업에서 공급계약자를 특정국가로 제한하지 않는 언타이드 원조는 타이드 원조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 수원국의 역량개발 촉진, 수원국 현지기업의 참여기회 부여, 국제경쟁입찰을 통한 원조사업 비용 절감 등

- 특히, 원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최빈국들에게는 언타이드 원조가 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주인의식 고취 등에 효과적

○ 최근 언타이드 원조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

- 2005년 언타이드 원조 통보금액(55억 SDR)은 전년에 비해 큰 폭(75%)으로 증가하여 타이드 원조와 비슷한 수준에 육박

□ OECD는 언타이드 원조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원조를 권고하였고, 최근에는 언타이드 지원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 OECD DAC는 원조의 언타이드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2001년 4월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권고(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LDCs)를 제정

- 최빈국에 대한 70만 SDR 이상의 원조(IRTC의 경우는 13만 SDR 이상)는 무조건 언타이드로 공여해야 하고 사전·사후통보를 모두 마쳐야 함

○ 나아가, DAC는 2006년 3월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권고'를 개정하여 언타이드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크게 확대함

- 이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소규모 사업(70만 SDR 미만 사업)도 언타이드로 제공하여야 하고 사후통보* 대상에 포함됨

* 소규모 사업의 수주결과를 연1회 집계하여 보고해야 하며 2008년부터 실시될 예정(보고대상기간 : 2006.7.1~2007.12.31)

라. 언타이드 원조의 투명성(Transparency) 제고

□ 2000년대 초 일본의 언타이드 원조 운용방식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언타이드 원조의 타이드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두

○ 미국은 2000년 일본의 아제르바이잔 Severnaya 발전소에 대한 언타이드 원조 건과 관련, 입찰방식이 일본기업에 낙찰되도록 운용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 나아가, 미국은 2000년 11월 제78차 수출신용참가국회의에서 타이드 원조에 대한 규제 조치가 언타이드 원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

□ OECD는 언타이드 원조의 실질적 타이드화 방지와 원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4년 11월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를 채택하였고 최근에는 동 합의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동 합의는 2005년부터 2년간 시행되었으며 언타이드 원조신용(기술협력 포함)에 대한 사전통보 및 사후통보 강화, 국제경쟁입찰 방식 적용 등을 골자로 함
 - 동 합의는 명목상 언타이드 차관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언타이드 차관에 의한 무역질서 왜곡 방지가 주 목적
- OECD는 2006년 11월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에서 언타이드 차관의 최근 사업수주 결과자료 축적을 위해 동 합의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동 합의는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사후통보 내용 부족으로 사업수주 결과에 대한 자료 축적을 위해 유효기간이 2년 더 연장됨
- 한편, 동 투명성 합의가 연장됨에 따라 언타이드 차관에 대한 사후통보 결과가 축적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기대됨
 - 사후통보에는 2005년 이후 언타이드 차관의 수주기업 관련정보 등 원조사업의 수주결과가 상세히 공개될 예정
 - 동 사후통보 결과는 언타이드 원조가 사실상 타이드로 운용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언타이드 원조에 대한 규제방안 도입이 거론될 수 있음

마. 신흥원조공여국(Emerging donors)에 대한 대응

- 최근 신흥원조공여국의 급부상에 따라 국제원조사회에서는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
 -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비OECD회원국은 신흥공여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특히, 중국과 인도는 광범위한 정치적·경제적 이해 증진을 위해 매우 공격적인 ODA 확대계획을 수립
 - 국제원조사회에서는 신흥공여국의 급부상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서로 교차
 - 기대되는 점 : ODA재원의 양적 확대에 기여, ODA 공여주체의 다양화에 따른 개도국의 협력기회 확대, DAC의 ODA관련 지침의 준수 및 보완 등

- 우려되는 점 : 수출촉진 목적의 원조자금 공여에 따른 무역질서 왜곡, ODA자금의 비생산적 사용, HIPC 국가의 채무감당능력 회복 저해, 국제사회의 개발노력과의 부조화 등
- OECD는 최근 신흥원조공여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로 양 방향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먼저, OECD 회원국이지만 DAC 비회원국인 국가들은 ‘OECD Member DAC Observers’라 명명하고 DAC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협력을 강화
⇒ OECD회원국의 DAC가입 유도(**Inreach strategy**)
 - 올해 10월 중 터키 이스탄불에서 DAC 회원국과 OECD Member DAC Observers 대표들 간의 정책대화를 개최
 - 매년 12월 OECD DAC의 중견관리자회의(SLM) 직전에 DAC 의장과 OECD Member DAC Observers 대표들 간의 비공식대화를 개최하기로 함
 - 한편, OECD 비회원국인 신흥원조공여국에 대해서는 수출신용협약을 채택하도록 유도하여 수출신용 및 원조에 의한 무역질서 왜곡을 방지
⇒ 비회원국들의 참여 확대(**Outreach strategy**)
 - OECD는 중국, 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 비회원국들을 올해 11월 정기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에 임시 Observer로 초대
 - 또한, 수출신용보증작업반회의(ECG)와 같은 OECD의 수출신용 관련 작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계속 확인할 예정

붙임 : 1. 증여율(GE)의 정의 및 산출방법
2. ODA 적격국가 목록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

목차보기

(붙임1)

증여율(GE)의 정의 및 산출방법

□ 증여율(Grant Element: G.E.)의 정의

- ODA 정의에 사용되는 증여율은 하나 또는 일련의 거래에 대한 지원조건(이자율, 거치기간, 만기)을 재무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차관액과 차관 원리금 현재가치(할인율: 10%)의 차이로 표현됨(즉, 무상으로 지원되는 비중임)
- ODA 차관의 경우 금리가 낮고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이 길수록(즉, 공여조건이 좋을수록) 증여율이 상승
- 무상원조(grant)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현재가치가 0 이므로 G.E.가 100%

□ 증여율의 산출방법

- 증여율은 원조 공여조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관 약정금액(commitment)의 액면금액에서 차관 원리금 상환액의 현재가치(할인율은 통화종류에 관계없이 10% 고정금리를 적용)를 차감하여 산출⁸⁾

$$\text{증여율(\%)} = \frac{\text{차관 액면금액} - \text{차관 원리금 상환액의 현재가치}}{\text{차관 액면금액}} \times 100$$

원조형태별 증여율

원 조 형 태	증 여 율 (G.E.)
- 무상원조(Grants)	100%
-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s)	25% 이상 100% 미만
- 상업자금(Funds for commercial purposes)	25% 미만

8) 원조통화의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원조의 지원조건 완화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증여율(G.E.) 대신 양허성 수준(Concessionality Level: CL)을 사용

* C.L.(양허성 수준) : G.E.와 산출공식은 동일하나 현재가치 할인을 위해서 i) 통화별 상업참고금리(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 CIRRR)와 ii) 상환기간에 따른 일정한 Margin을 서로 더한 할인율(i+ii)을 적용하는 점이 서로 다르며, C.L. 계산에 사용되는 이러한 할인율을 차등할인율(Differentiated Discount Rate: DDR)이라고 함

(붙임2)

ODA 적격국가 목록(2006.1.1 현재)

□ 2005년 12월에 개정된 목록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사용(즉 2005, 2006, 2007년 ODA 실적보고에 사용)

최빈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기타 저소득국 Other Low-Income Countries (Other LICs) (per capita GNI < \$825 in 2004)	하위 중소득국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LMICs) (per capita GNI \$826-\$3,255 in 2004)	상위 중소득국 Upper Middle-Income Countries (UMICs) (per capita GNI \$3,256-\$10,065 in 2004)
Afghanistan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 Chad Comoros Congo, Dem.Rep. Djibouti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mbia Guinea Guinea-Bissau Haiti Kiribati Laos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dives Mali Mauritania Mozambique Myanmar Nepal Niger Rwanda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Sudan Tanzania Timor-Leste Togo Tuvalu Uganda Vanuatu Yemen Zambia	Cameroon Congo, Rep. Côte d'Ivoire Ghana India Kenya Korea, D. Rep. Kyrgyz Rep. Moldova Mongolia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Tajikistan Uzbekistan Viet Nam Zimbabwe	Albania Algeria Armenia Azerbaijan Belarus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razil China Colombia Cub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El Salvador Fiji Georgia Guatemala Guyana Honduras Indonesia Iran Iraq Jamaica Jordan Kazakhstan Macedonia (former Yugoslav Republic) Marshall Islands Micronesia, Federated States Morocco Namibia Niue Palestinian Adm. Areas Paraguay Peru Philippines Serbia & Montenegro Sri Lanka Suriname Swaziland Syria Thailand Tonga Tunisia Turkmenistan Ukraine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Barbados Belize Botswana Chile Cook Islands Costa Rica Croatia Dominica Gabon Grenada Lebanon Libya Malaysia Mauritius Mexico Nauru Oman Palau Islands Panama Saudi Arabia* Seychelles South Africa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Vincent & Grenadines Trinidad and Tobago Turkey Uruguay Venezuela

* Saudi Arabia는 세계은행 발표 2004년도 GNI 기준 ODA 비적격국인 고소득국으로 신규 분류되었으나, 2005년 및 2006년에 도 연속해서 고소득국으로 분류될 경우 2008년에 ODA 비적격국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

단 신 1

국제 개발원조기관간 다자협약체 결성

(지속가능 도시개발문제를 중심으로)

1. 다자협약체 개요

- 2006년 9월 세계 유수의 유상원조기관들은 도시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필요한 장기간의 대규모 재원 마련을 위해 개발원조기관간 다자협약체를 결성
 - 다자협약체는 2006. 9. 18(월) 싱가포르에 모여 결성식을 가진 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
 - 다자협약체 참여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을 포함 총 7개 기관
 -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아시아개발은행(ADB), 프랑스 원조청(AFD),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독일 부흥금융금고(KfW), 태국 대외원조국(NEDA),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참여

2. 다자협약체 결성 배경

- 아시아 지역에 2015년까지 인구 천만명 이상의 메가시티(Megacity)는 23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20개가 개발도상국에 위치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큰 문제로 대두
 - 이 같은 메가시티는 경제성장의 동력(Engine of Growth)인 동시에 빈곤의 중심(Pocket of Poverty)으로 작용
- 세계의 주요 개발원조기관들은 빈곤퇴치에 필요한 도시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여러 원조기관이 협약을 구성하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원조자금 제공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공유

3. 국제세미나의 내용 및 향후 행동강령

□ 국제세미나 주제발표 내용

○ 제1주제 : 거대 도시화진행 및 개발은행의 역할 (발표: JBIC)

- 2030년까지 아시아 지역 내 도시인구는 약 6억 7천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1천만 이상의 메가시티는 약 2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도시화는 i) 도시사회간접자본의 확대, ii) 국가 전체적 경제성장, iii) 경제의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달성과 같은 순기능으로 국가 전체적인 빈곤퇴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도시 빈민계층의 확대로 인한 빈곤의 중심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도시 빈민계층의 확대는 일정한 시기가 진행될 경우, 이에 따른 문제 해결에 천문학적인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바, 지금이 동 문제해결을 논의해야 할 적절한 시기임을 강조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개발금융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 필요
 - ① 민간부분과의 조화를 통한 대규모 / 장기간 / 양허성 개발원조지원 강화
 - ② 원조지원사업간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실시
 - ③ 도시하부계층에 대한 통합되고 복합적인 지원체계 확립
 - ④ 에너지 효율강화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강화
 - ⑤ 도시 대중교통체계 강화

○ 제2주제 : 에너지효율 및 원조공여자의 역할 (발표: AFD)

- 메가시티화는 필연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바,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은 도시화의 순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음
- 메가시티화에 따른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Key Point
 - ① 도시화를 위한 사전계획 및 지속적인 점검
 - ② 도시자원관리능력 향상
 - ③ 에너지공급 및 사회간접자본
 - ④ 일반주거지, 사무실 및 산업시설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
- 개발원조기관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다자협의체의 역할을 강조

○ 제3주제 : 도시대중교통 (발표 : KfW)

- 도시대중교통은 메가시티화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써 에너지 효율, 환경 및 부의 재분배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대중교통수단의 발달은 개인적 교통수단의 발달에 비하여 그 파급효과가 일부 집단이 아닌 도시 전반에 미치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감소, 도시 기동성 제고 및 교통비용의 감소 등으로 도시화의 순기능 제고
- 대중교통수단의 개발은 다른 원조사업에 비해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바, 개발원조기관간의 개별적 지원보다는 집단적 지원을 통한 대규모의 장기간 원조가 필수적

□ 다자협약체 참여기관의 향후 행동강령

- ① 개발원조의 준비, 실행 및 증대단계에서의 경험공유체계 강화
- ② 수원국의 경제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원조체계 확립
- ③ 참여 개발원조기관, 수원국, 민간부분 등 이해당사자간의 Partnership 강화
- ④ 핵심 개발원조사업에 대한 공동사업평가 수행

3. 시사점 및 의의

- 아시아 등 빈곤지역에서는 도시화 문제 해결이 빈곤퇴치를 위해 꼭 필요하며 국제 개발원조기관간 공동노력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공유
- 저소득국의 효과적인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개발이 낙후된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과밀화된 도시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
- 세계 유수의 유상원조기관간 다자협약체 결성은 대규모 도시 인프라 개발에는 유상원조가 더욱 적절한 원조수단임을 확인해 주고 있음
- 세계은행, ADB 등 다자간개발은행은 물론이고, 일본 JBIC, 독일 KfW, 프랑스 AFD 등은 세계의 주요 유상원조기관으로서 협조유자를 통한 도시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

- 우리나라 EDCF는 이번 다자협의체 참여를 통해 국제개발원조기관들과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채널을 확보하였고 국제원조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였음
- 이번 다자협의체 참여기관들은 향후 아시아지역에서의 대규모 도시사회간 접자본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협조융자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 EDCF의 참여가 용이해 짐
- 또한, 국내의 한정된 원조재원으로 대 개도국 앞 대규모의 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국제원조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작 성 : 엄 성 용, syum@koreaexim.go.kr

단 신 2

제98차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의 주요 내용

1. 회의 개요

- OECD는 제109차 수출신용보증작업반회의(ECG) 및 제98차 수출신용참가국회의 (Participants)를 연속 개최하고 책임있는 용자, 타이드 원조 지원현황, 언타이드 ODA 투명성 합의의 이행상황 등 수출신용 및 원조 관련 이슈들을 논의
 - 일시 및 장소 : 2006. 11. 13 ~ 11. 15(3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이번 회의에는 26개 참가국 대표, 6개 국제기구 대표, 7개 임시 Observer 국가 대표 등이 참석
 - 참가국 : OECD 회원국(30개국) 중 멕시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4개국을 제외한 26개국이 참석
 - 국제기구 : WTO, World Bank, IFC, Berne Union, EC 등
 - 임시 Observer : 브라질, 중국, 인도, 이스라엘,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남아공

2. 주요 의제 및 논의내용(원조관련 내용만 발췌)

가. 채무감당능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중국대표 발표내용)

- 중국 수출입은행 총재(LI Ruo Gu)는 이번 회의에 임시 Observer로 참석하여 'Debt Sustainability & Responsible Lending'이라는 주제로 중국 수은의 주요 활동방향을 소개
 - HIPC을 위한 국제사회의 채무구제(Debt Relief)는 해당 국가들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했으나, 중국 수은은 저소득국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신규 자금제공(Fresh Capital Injection)에 주력해 왔음을 강조
- 주요 공여국들은 중국이 임시 Observer로 이번 정기회의에 참석해 준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OECD의 수출신용 및 원조 분야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함

- 다만, 일본은 중국이 WTO 협정의 보조금 조항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차관지원을 자제할 줄 아는 책임있는 용자(responsible lending)를 해 달라고 당부

나. 2005년도 '재생가능에너지 및 수자원 부문양해' 적용현황 점검

- 사무국은 2005년 7월 재생가능에너지 및 수자원 부문양해(Annex IV) 도입 이후 2006년 6월말까지의 부문양해 적용현황을 보고
 - 2005년 하반기 중 재생·수자원 프로젝트는 전체 승인액(132억SDR, 926건)의 3.58%(4.7억SDR, 17건)를 차지
 - 지난 1년간('05. 7 ~ '06. 6) 사전통보된 사업(473건) 중 재생·수자원 사업은 총 79건(16.7%)*을 기록
 - 특히, 재생·수자원 사업 79건 중 원조자금 지원으로 통보된 건은 60건, 재생·수자원 부문양해를 적용하여 통보된 건은 10건
- 의장은 참가국의 의견에 따라 2006년 하반기 실적을 포함하여 내년 4월 정기회의에 재생·수자원 부문양해의 적용현황을 보고하되 동 부문에 대한 원조지원 현황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
 - 미국은 재생·수자원 부문에 대한 원조 지원현황도 동 보고서에 포함해 줄 것을 먼저 요청

다. 2006년도 상반기 Helsinki Tied Aid 지원현황 분석

- 사무국은 2006년 상반기 타이드 원조 통보실적을 분석하여 보고
 - 올해 상반기 타이드 원조 통보실적은 15억 SDR로 전년동기(24억 SDR) 대비 크게 감소(37% 감소)
 - Tied aid 중 Helsinki-type은 11억 SDR을 차지하였고 전년동기(16억 SDR)에 비해 낮은 수준(22% 감소)
 -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의 주요 공여국은 스페인(38%), 네덜란드(13%), 대한민국(11%) 순이며, 주요 수원국은 이집트(23%), 도미니카공화국(9%), 스리랑카(8.9%) 순
 - 올해 상반기 동안 대면협의(consultation)를 받은 사업은 없었음

- 주요 참가국들은 **Helsinki 원칙이 잘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Helsinki tied aid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
 - 사무국은 Helsinki 원칙 도입 전후의 통보 실적을 서로 비교하면서 지금까지 Helsinki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음을 강조
 - Helsinki-type tied aid의 주요 지원대상이 통신, 에너지 등 상업성이 있는 분야에서 교통, 교육, 보건 등 상업성이 없는 분야로 대거 옮겨 갔음을 지적
 - 미국은 사무국의 Tied aid에 대한 분석자료 및 발표 내용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당부하면서 타이드 원조 분야에서 Helsinki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데 동의

라. 타이드 원조와 프로젝트 적격성(상업성 판정테스트)

- EC는 수출신용협약 제34조에 따른 상업성 검증시 IMF의 정책준수사항(conditionalities)*을 감안하여 IMF에 의해 상업금융이나 수출금융이 금지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업성 검증 테스트를 거치지 말고 타이드 원조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
 - * IMF로부터 용자를 수혜받는 가맹국은 IMF와 특정 경제 및 금융정책 프로그램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정책준수사항(conditionalities)이라고 함 → IMF의 용자금이 수혜국의 국제수지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와 정책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
- 이런 경우 동 프로젝트는 상업성 검증을 위한 Key test나 대면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타이드 원조 지원이 가능
- 주요 공여국들은 EC의 제안에 대체로 찬성하나 구체적인 방법론을 마련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
 - 일본은 기본적으로 EC의 제안을 지지하나 현행 상업성 검증을 위한 사전지침(Ex Ante guidance)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경험 축적이 필요하므로 상업성 검증 테스트는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미국도 EC의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EC의 제안을 구체화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

- 의장은 EC의 제안에 대해 참가국들이 일반적으로 공감하나 이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으므로 EC가 IMF와 공동작업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회의에 제시해 줄 것을 요청

마. 2006년도 상반기 Untied ODA 투명성 합의 이행상황 보고

- 사무국은 언타이드 차관 투명성 합의(Untied ODA Transparency Agreement)에 따른 올해 상반기 통보실적을 보고하고 동 합의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안
- 사무국은 2005. 1. 1부터 발효된 언타이드 차관 투명성 합의에 따라 2006년 상반기 중 사전통보된 언타이드 차관실적을 분석·보고
 - 2006년 상반기 중 사전통보된 언타이드 차관은 총 33억 SDR(64건)로 2005년 한해 실적(60건, 37억 SDR)에 필적할 만큼 크게 증가
 - 주요 공여국은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순이나 일본이 전체 실적의 82%를 차지하였고, 주요 수원국은 인도, 베트남, 중국 순
 - 전체 사전통보 건의 대부분(88.1%)이 구매계약시 국제경쟁입찰(ICB)을 적용하였고, ICB 적용이 어려운 나머지는 현지경쟁입찰(7%), 수의계약(2.6%) 등을 적용
- 한편, 사무국은 상기 투명성 합의에 따라 올해 8월말까지 취합된 사후통보실적을 발표하고 동 투명성 합의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안함
 - 동 사후통보 실적은 전년도에 사전통보된 언타이드 차관사업에 대해 각 공여국의 수주실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큰 관심을 모았으나 아직 입찰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업이 많아 통보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음
 - 예컨대, 일본은 2005년 중 사전통보한 언타이드 차관이 약 30억 SDR에 달했으나 수주한 실적은 2.5백만 SDR에 불과하였다고 사후통보함
 - 사무국은 사후통보 실적이 미미하여 현시점에서는 언타이드 차관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우므로 올해 말에 끝나는 투명성 합의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안하고 참가국의 의견을 구함
- 대부분의 공여국들은 언타이드 차관의 사후통보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 투명성 합의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데 동의함

- 미국은 투명성 합의에 따른 사후통보 실적이 미미한 것은 차관사업의 입찰 절차 완료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됨에 따른 것이므로 투명성 합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할 것을 제안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신흥원조공여국들의 임시 Observer 참여**로 수출신용협약 참가 유도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되었으나 아직 갈 길이 먼 상황
 -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강대국들이 이번 회의에 임시 Observer로 참여하게 되어 OECD의 Outreach 전략이 탄력을 받게 되었으나, 중국 등 신흥원조공여국들이 무분별한 원조 공여행태를 감안할 때 이들을 수출신용협약 참가국으로 가입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
- **IMF 프로그램에 의해 추가 차입이 불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는 타이드 원조사업 지원시 상업성 검증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전망**
 - IMF conditionalities에 따라 추가 차입이 제한된 국가는 2nd Key test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고 타이드 원조 지원시 프로젝트의 상업성 테스트를 면제하자는 EC의 제안은 참가국들로부터 폭 넓은 지지를 받았음
- **언타이드 차관의 수주결과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언타이드 차관에 대한 규제방안 도입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
 - 언타이드 차관에 대한 사후통보 자료 부족으로 언타이드 차관의 실질적 타이드화를 주장하기는 곤란하므로 언타이드 차관의 제재방안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

목차보기

【 자 료 】

2005년도 우리나라 ODA통계(확정치)의 주요 내용

1.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 2005년 우리나라 ODA 규모는 전년대비 78% 증가한 7억 5,232만 달러로서 국민총소득(GNI)의 0.1%를 기록
- 다자간 원조의 대폭 확대와 양자간 원조의 꾸준한 증가세가 실적 증가의 주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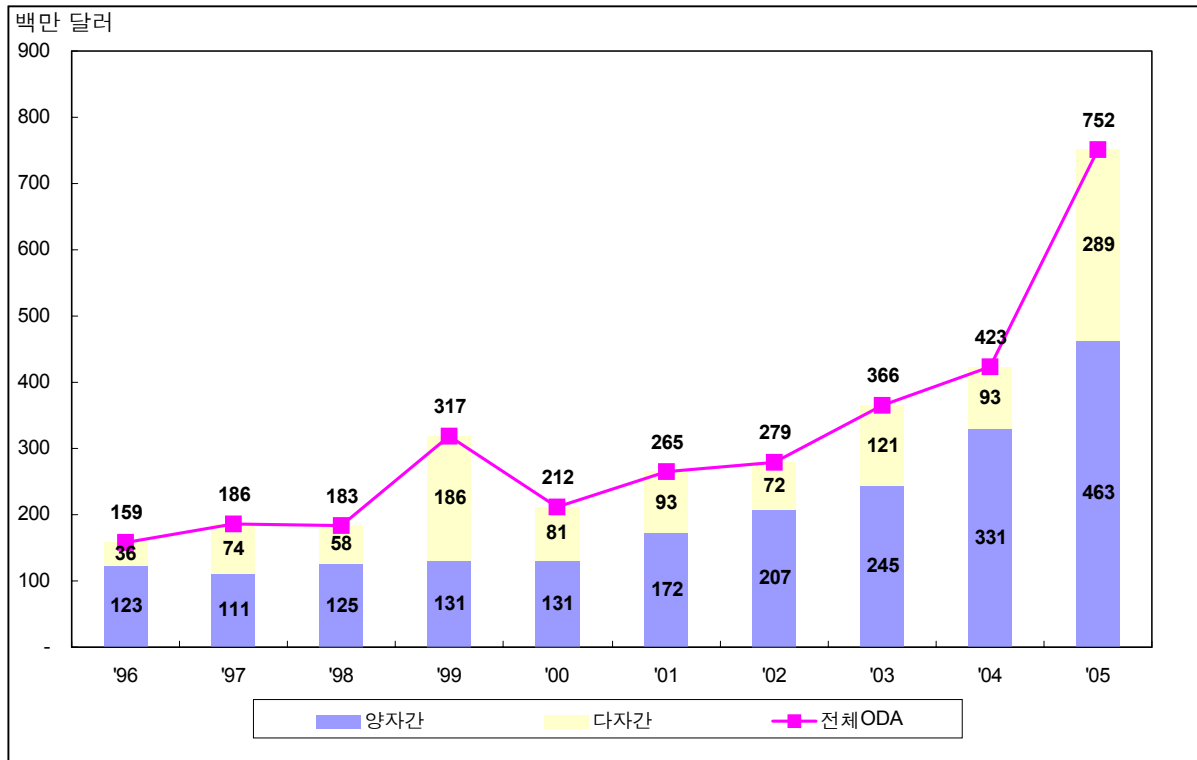
우리나라 ODA 공여 규모(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구 분	2004년	2005년	증감율(%)	비중(%)
ODA (a+b)	423.3	752.3	77.7	100.0
양자간 ODA (a)	330.8	463.3	40.1	61.6
무상원조	212.1	318.0	49.9	42.3
그중: KOICA	174.6	201.9	15.6	26.8
유상원조(EDCF)	118.7	145.3	22.4	19.3
다자간 ODA (b)	92.6	289.0	212.1	38.4
그중: 한국은행	62.5	239.9	283.8	31.9
ODA/GNI(%)	0.06	0.10	-	-

- 양자간 : 다자간 지원비중은 62% : 38%로 전년에 비해 다자간 원조 비중이 14% 포인트 상승
- 양자간 ODA는 4억 6,330만 달러로 전년대비 40% 증가
 - 무상원조는 이라크에 대한 지원 증가로 3억 1,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양자간 ODA의 68.6%를 차지
 - * 이라크 지원(백만 달러) : 0.02('02년) → 40.6('03년) → 72.2('04년) → 149.5('05년)
 - 유상원조는 경제·사회 인프라를 중심으로 1억 4,530만 달러를 지원하여 양자간 ODA의 31.4%를 차지

우리나라 ODA의 연도별 추이(순지출 기준)



○ 다자간 ODA는 2억 8,901만 달러로 전년대비 212% 증가

- 우리나라의 IDB 가입에 따른 출연·출자금(8,120만 달러) 납입과 IDA 출자금 증가(4,367만 달러→1억 1,973만 달러)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06년에는 IDA와 지역개발은행(MDB)에 대한 출연·출자금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다자간 ODA는 예년 수준인 1억 달러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도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은 0.10%, 1인당 ODA는 15.6달러를 기록

○ 2005년도 GNI대비 ODA 비율과 1인당 ODA는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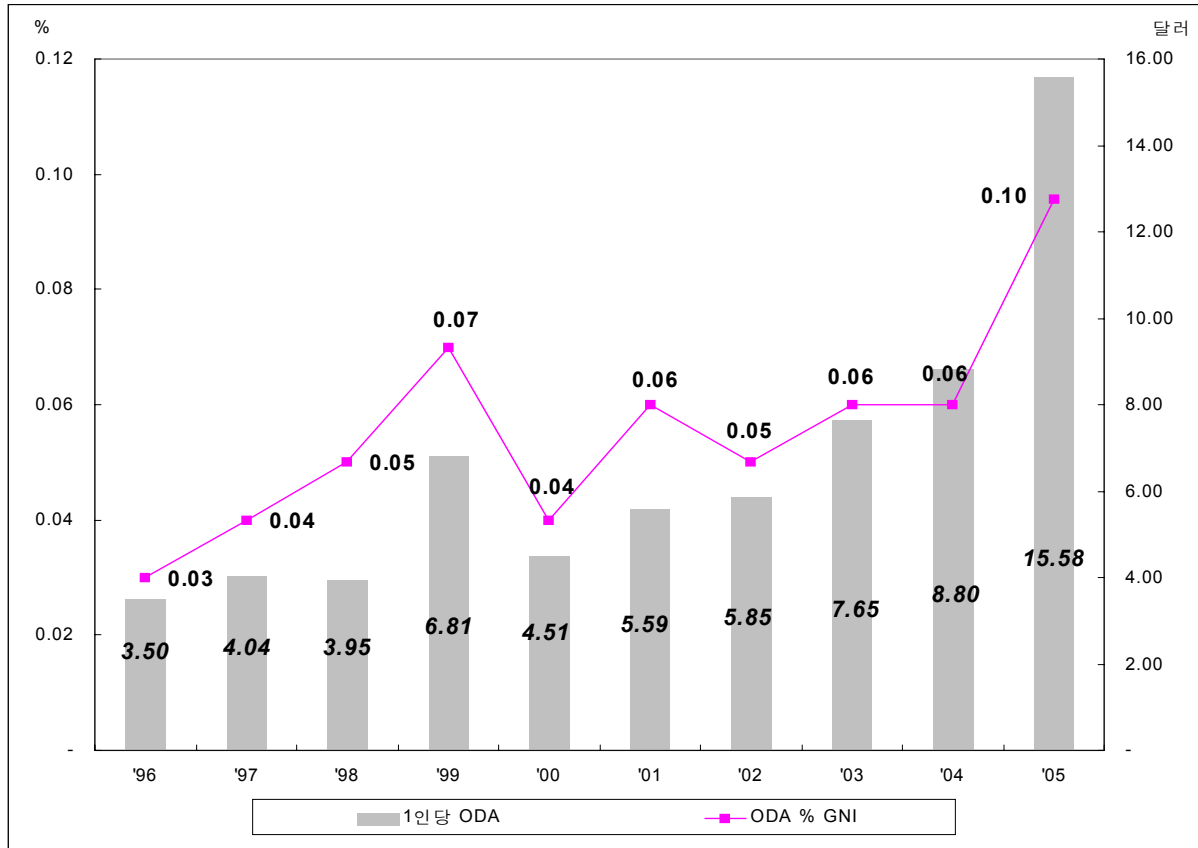
- ODA/GNI 비율 : 0.06% → 0.10% (0.04% 포인트 증가)

- 1인당 ODA : 8.8달러 → 15.6달러(약 7달러 증가)

○ 그러나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평균에는 크게 못 미쳐 ODA/GNI 비율은 1/3 수준, 1인당 ODA는 1/8~1/9 수준에 그침

* DAC 회원국 평균(잠정치) : 0.33%(ODA/GNI비율), 130.2달러(1인당 ODA)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 및 1인당 ODA 추이(순지출 기준)



2. 원조형태별 ODA 규모(순지출 기준)

- 양자간 원조는 KOICA와 다수의 정부부처가 실시하는 무상원조와 EDCF에 의한 대개도국 차관인 유상원조로 대별
- 무상원조는 KOICA(2억 186만 달러)와 국방부(8,099만 달러)가 전체의 88.9%를 차지
 - KOICA*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원조(물자지원 등) 9,634백만 달러, 전문가 파견 등 기술협력 5,963만 달러, 비상재난구호 2,497만 달러를 지원
 - * KOICA의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15.6% 증가하였지만, 전체 무상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82.3%→63.5%)
 - 국방부*는 對이라크 평화재건 사단의 재건 활동이 7,547만 달러, 對아프가니스탄의 의료 및 재건 활동이 552만 달러를 차지
 - * 국방부는 인도적 대민 지원활동과 사회경제개발 지원활동 증가로 전년대비 412.4% 증가

-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대개도국 차관 지원액을 말함
 - EDCF는 '05년 대개도국 차관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1억 4,530만 달러를 순 집행함
- 다자간 원조는 UN기구,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등에 대한 출연·출자금 및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
- 2005년에는 세계은행(IDA) 출자금과 미주개발은행(IDB) 출연·출자금이 다자간 원조의 약 70%를 차지
 - '05년 다자간 원조는 세계은행(IBRD 및 IDA) 출자금 1억 2,012만 달러(IDA 1억 1,973만 달러), IDB 등 지역개발금융은행 출연·출자금 1억 2,592만 달러, UN기구 분담금 3,827만 달러 등으로 구성

원조형태별 ODA 규모(순지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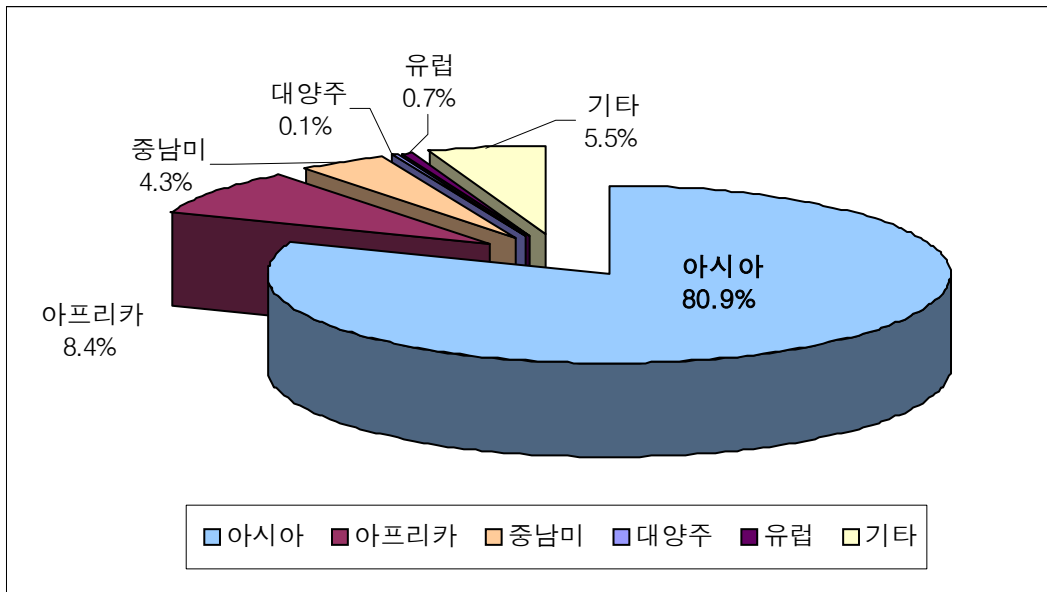
(백만 달러)

양자간 원조	무 상 원 조							유 상 원 조
	프로젝트원조	프로그램원조	기술협력	비상재난구호	NGO 지원	행정비용	기타	
463.3	148.4	36.6	80.2	26.7	4.5	19.4	2.2	145.3
다자간 원조	출 연 · 출 자						양허성 차관	
	UN기구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기타		
		IDA	기타	IDB	기타			
289.0	38.3	119.7	0.4	81.2	44.7	11.3	△6.6	

3. 지역·국가별 지원규모(순지출 기준)

- 양자간 ODA는 81%가 아시아에 집중되었으며, 아프리카(8.4%), 중남미(4.3%) 등이 그 뒤를 이음
- 아시아 지역은 중동(양자간 ODA의 38.4%), 남부 및 중앙아시아(21.4%), 동아시아(21.1%)등으로 구성
-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각각의 지리적 배분도 양자간 ODA 전체의 지리적 배분과 유사하여 아시아 지역에 각각 80.1, 82.7%를 지원

양자간 ODA의 지역별 지원비중(순지출 기준)



양자간 ODA의 지역별 지원규모(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대양주	기타*	합계
무상원조	254.8	17.8	14.7	3.9	1.1	25.6	318.0
유상원조	120.2	21.3	5.1	-0.7	-0.5	-	145.3
합 계	374.9	39.1	19.8	3.3	0.5	25.6	463.3

* 기타는 특정지역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배정되어 배분이 어려운 경우임

- 국가별로는 이라크에 전체 양자간 ODA의 32%(양자간 무상원조의 47%)가 집중되었고,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
- 이라크는 2003년 3월 전쟁발발에 따른 무상원조 증가에 힘입어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제일의 ODA 지원 대상국으로 자리잡음
 - '05년 이라크에 대한 무상원조(1억 4,954만 달러)는 국방부(7,547만 달러)와 KOICA(7,383만 달러)가 대부분을 지원
- 상위 10개국에 대한 양자간 ODA 비중은 72.2%로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함(74.6%→72.2%)

양자간 ODA의 국가별 지원규모(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순위	국 가	무상원조	유상원조	합계	
				금액	비중(%)
1	이라크	149.5	-	149.5	32.3
2	스리랑카	13.2	20.0	33.2	7.2
3	방글라데시	2.1	29.8	31.9	6.9
4	예멘	0.3	23.8	24.1	5.2
5	중국	5.9	13.8	19.7	4.3
6	인도네시아	11.3	7.0	18.3	3.9
7	캄보디아	6.6	11.2	17.8	3.8
8	베트남	12.3	3.0	15.3	3.3
9	가나	0.3	13.4	13.7	3.0
10	케냐	0.5	10.4	10.9	2.4
상위 10개국 소계		202.1	132.5	334.5	72.2
기타 128개국 소계		115.9	12.8	128.8	27.8
총 합계		318.0	145.3	46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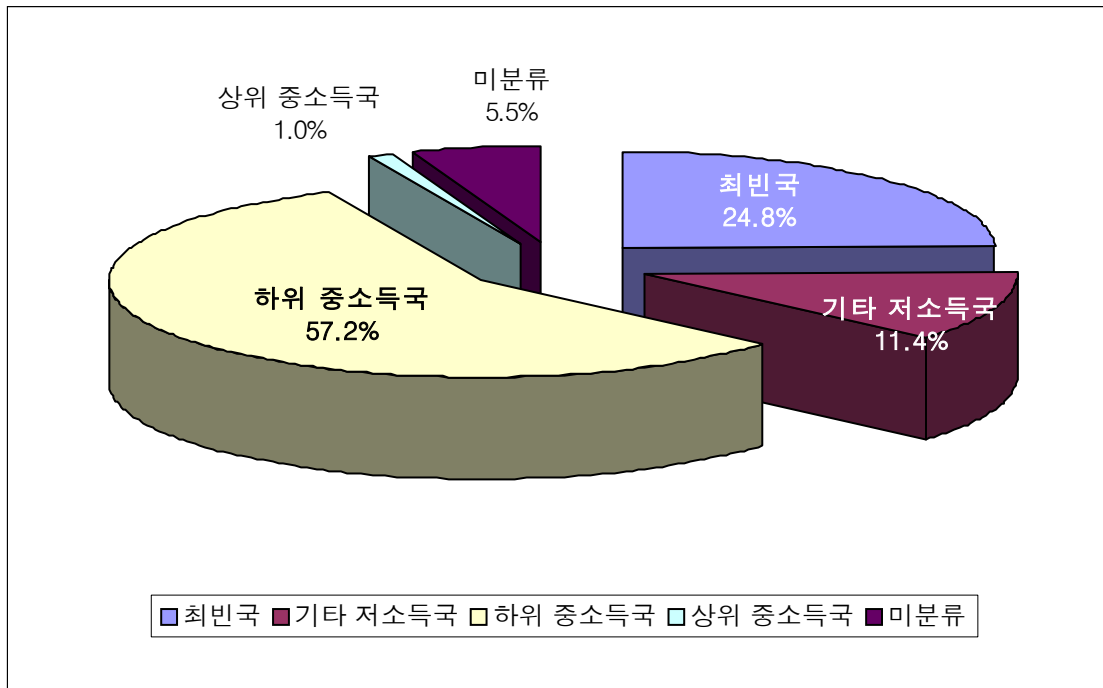
-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LMIC)에 양자간 ODA의 57%가 지원되었고 최빈국(LDC)에는 25%가 지원됨
- 전년과 비교하여 최빈국 비중은 비슷하나, 하위중소득국 비중은 9.4% 포인트 상승하고 기타 저소득국비중은 8% 포인트 감소함
- 무상원조는 이라크 지원 확대로 하위중소득국 비중(68%)이 높은 반면, 유상원조는 방글라데시, 예멘, 라오스, 미얀마 등에 대한 집행 증가로 최빈국 지원비중(52%)이 높음

양자간 ODA의 소득그룹별 지원규모(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구 분	최빈국 (UN지정)	기타 저소득국 (1인당 GNI <825달러)	하위 중소득국 (≤3,255달러)	상위 중소득국 (≤10,065달러)	미분류	합계
무상원조	39.8	29.6	217.4	5.6	25.6	318.0
유상원조	75.3	23.3	47.4	-0.8	-	145.3
합 계	115.1	52.9	264.8	4.8	25.6	4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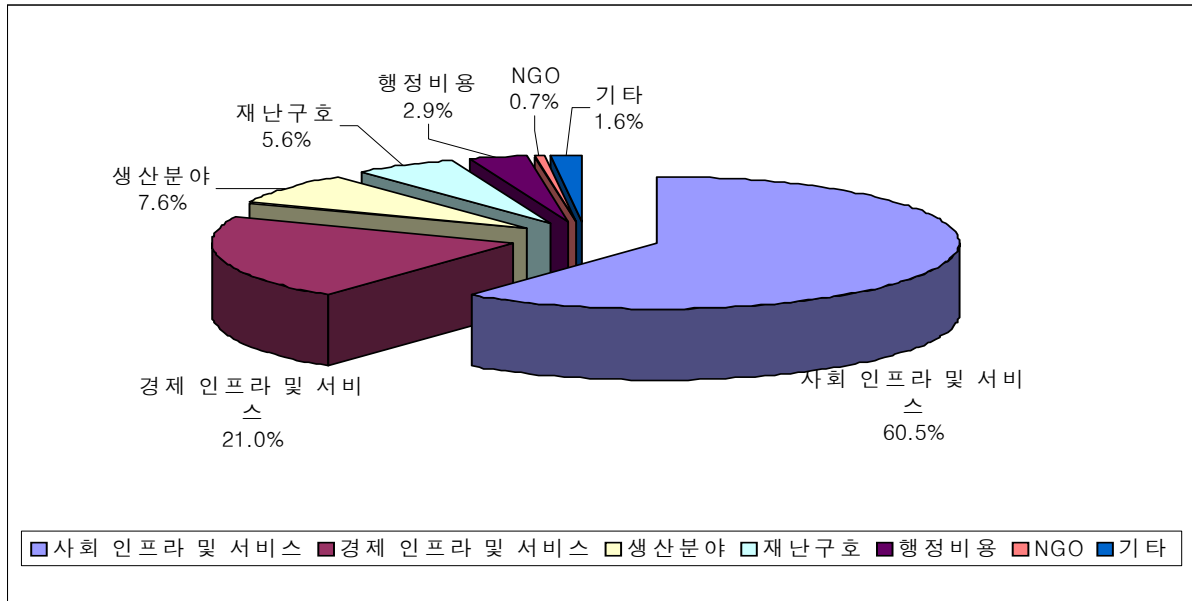
양자간 ODA의 소득그룹별 지원비중(순지출 기준)



4. 분야별 지원규모(승인 기준)

- 양자간 ODA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61%(3억 9,800만 달러),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에는 21%(1억 3,812만 달러)를 지원
 -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는 식수공급 및 위생 부문(1억 156만 달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건(8,964만 달러), 공공행정(7,230만 달러), 교육(5,017만 달러)이 그 뒤를 이음
 -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는 교통 부문(8,292만 달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통신(5,164만 달러), 에너지(325만 달러)가 그 다음 순
 - 생산 분야는 농·임·수산업 등을 중심으로 5,025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비상 재난구호에는 3,687만 달러, 행정비용으로는 1,938만 달러가 집행됨

양자간 ODA의 분야별 지원비중(승인 기준)



양자간 ODA의 분야별 지원규모(승인 기준)

(백만 달러)

구분	프로젝트 원조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기타	합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319.42	34.82	43.75	-	398.00
교육	26.57	2.03	21.57	-	50.17
보건	67.50	13.37	8.77	-	89.64
인구	-	-	0.06	-	0.06
식수공급 및 위생	101.11	-	0.45	-	101.56
공공행정 및 시민단체	44.64	17.75	9.91	-	72.30
기타	79.60	1.68	2.98	-	84.25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113.41	1.51	23.20	-	138.12
교통	78.90	0.69	3.33	-	82.92
통신	34.18	0.04	17.43	-	51.64
에너지	0.33	0.78	2.14	-	3.25
금융 서비스	-	-	0.16	-	0.16
기타	-	-	0.15	-	0.15
생산 분야	37.63	0.14	12.46	-	50.25
농·임·수산업	35.30	0.14	5.85	-	41.29
산업·광업·건설	2.33	-	5.89	-	8.22
무역 및 관광	-	0.02	0.72	-	0.74
다분야	0.43	0.07	3.38	-	3.88
재난구호	-	-	-	36.87	36.87
행정비용	-	-	-	19.38	19.38
기타	-	-	0.28	11.02	11.30
합계	470.90	36.56	83.06	67.27	657.79

작성 : 조정화, cch@koreaexim.go.kr

목차보기